

#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검 토 보 고

이 조례안은 2003년 5월1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2003년 5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## 1. 제안이유

-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등 파주시도시계획구역이 변경(추가)되었으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(추가) 고시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파주시도시계획구역 변경(추가)에 따른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

- 1) 기 정 : 53.674km<sup>2</sup>
- 2) 변 경 : 61.689km<sup>2</sup>
- 3) 증가내역 : 교하읍 도시계획 추가결정(8.015km<sup>2</sup>)

나. 읍·면·동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현황(별도 붙임)

다. 도시계획세 과세현황 (단위:건, 백만원,%)

구 분	2002년 부과현황		2003년 부과예상		2003년 예상 증감세액 및 증감율	
	과 세 물건수	세액(A)	과 세 물건수	세액(B)	증감세액	증감율 (B/A)
계	81,783	1,769	102,869	2,477	708	140.0
재산세분 도시계획세	42,426	916	52,467	1,276	360	139.3
종합토지세분 도시계획세	39,357	853	50,402	1,201	348	140.7

라. 과세물건 범위

1) 과세대상 :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·건축물

2) 과세제외 토지

-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, 임야

- (구)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

### 3. 검토의견

- 동 변경안은 파주 교하 도시계획 결정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고시되어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(추가)되었기 동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(추가) 고시하기 위해
- 지방세법 제238조와 파주시시세조례 제85조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- 파주시 교하지역 도시계획구역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과 면적은 교하면(야당리, 다울리, 동패리, 목동리, 당하리, 와동리) 지역 8,015km<sup>2</sup>임.
- 참고적으로,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%선으로 두 지방세에 포함돼 오는 7월과 10월에 각각 부과하게 되며,

-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(추가)에 따라 금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세는 2002년도 과표기준으로 약 708백만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  
- 이상과 같이, 동 변경안은 파주 교하 도시계획구역 변경(증가)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를 위해 필수적인 사전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